

定團體를 共產主義者行動團體 또는 共產主義者戰線團體라고 判定하는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實제로 있는 경우 다음 行爲를 하는 것은 違法이다.

- (1) 그 團體의 構成員이 委員會의 最終命令을 알거나 그 告知를 받고
- (A) 미합중국에서 選舉에 의하지 않는 官職 또는 職責을 구하고, 受容하거나 그 職에 就任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團體의 構成員이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밝히지 않는 行爲; 또는
 - (B) 미합중국에서 選舉에 의하지 않는 官職 또는 職責에 就任하는 行爲; 또는
 - (C) 防衛施設에 職責을 구하고 受容하거나 그 職에 就任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團體의 構成員이라는 事實을 감추거나 밝히지 않는 行爲; 또는
 - (D) 그 團體가 共產主義者行動團體인 경우, 防衛施設內 職責에 從事하는 行爲; 또는
 - (E) 改正된 全國勞動關係法의 第2條 第(5)項에서 規定된 바와 같은 勞動團體內 職責에 就任하는 行爲 또는 同 法에 따라 提起되고 審理中인 事件 또는 訴訟節次에 있어 使用者를 代表하는 行爲
- (2) 미합중국 또는 防衛施設의 官吏 또는 職員이 委員會의 最終命令을 알거나 그 告知를 받고,
- (A) 그 團體에 資金을 기부하거나 便宜를 제공하는 行爲; 또는
 - (B) 特定人이 그 團體의 構成員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告知를

받고도, 同人の 行爲遂行 또는 回避가 本條 (1)項 違反이 될 경우, 同人으로 하여금 그 行爲를 遂行하거나 回避하도록 助言, 忠告, 强要하는 行爲

(b)(國防部長官에 의한 防衛施設 指定; 施設의 管理에 의한 告示의 揭示; 指定事實에 대한 職員의 陳述) 國防部長官은 미합중국의 安全은 本條의 위 (a)項 適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判斷. 決定하는 活動에 관하여, 이 第782條 第(7)項에 規定된 바와 같은 施設을 指定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 長官은 그와 같이 指定된 施設의 管理를 즉각 告示하고 그에 의해 管理者는 지체없이 그 施設內 모든 職員들과 求職者들이 알 수 있는 場所에 눈에 띄도록 그 指定 告示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 揭示는 그에 服從하고 영향을 받는 어느 누구에게나 그 指定事實을 告示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長官의 要請이 있을 경우 그와같이 指定된 施設의 管理者는 그 施設의 職員 個個人으로 하여금 그 施設이 이 法의 目的을 위하여, 이 條項에 따라 長官이 指定하였음을 알고 있다는 陳述書에 署名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第785條(共產主義者團體 構成員에 대한 旅券發給 拒否) (a) 이 法 第782條 第(5)項에 規定된 바와 같은 共產主義者團體가 登錄되거나, 그 團體로 하여금 登錄하도록 요구하는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實제로 있는 경우, 그 團體의 어느 構成員이 그 團體登錄 및 命令事實을 알거나 告知를 받고도 다음 行爲를 하는 것은 違法이다.

(1) 미합중국의 權威에 의하거나, 그 權威下에 發給되고 更新되

는 旅券의 發給 또는 更新을 申請하는 行爲； 또는

(2) 그 旅券을 使用하거나 使用하려 기도하는 行爲

(b) 特定團體가 共產主義者 行動團體로서 登錄되거나 그 團體로 하여금 登錄하도록 要求하는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實제로 있는 경우, 미합중국의 官吏 또는 職員이 어느 個人에게 그가 그 團體의 構成員이라는 정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旅券을 發給해 주거나 更新해 주는 것은 違法이다.

第786條, 第787條. (各 1968. 1. 2. 廢止)

第788條(委員會의 最終命令의 記錄：一般監督) (a) 委員會는 記錄을 保存하고 管理하며 그 記錄들은 모든 團體와 個人에 대해, 第792條의 (g)項 내지 (j)項 또는 第792條의 (f)項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있는 모든 團體와 個人們의 名稱과 住所를 알려 줌으로써 一般監查가 가능하다.

(b) 委員會의 記錄과 命令을 포함한 委員會의 모든 公的 節次와 審理, 記錄寫本들은 申請과 상당한 費用의 支給에 의해 委員會에 의해 당시 確定된 그대로, 委員會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第789條(州相互間 또는 外國과의 交易에 관한 郵便등 手段의 使用) 이 法 第782條 第(5)項에 規定된 바와 같은 共產主義者 團體라고 判定한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있는 團體나, 同命令을 알거나 告知를 받고도, 그 團體를 위하여 行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하는 것은 違法이다.

(1) 그 出版物과 봉투, 포장지 기타 그것이 郵送되거나 流通되거나 傳達되는 용기상에 法務部令이 規定한 다음의 事項을 表

示하지 않는 한, 미합중국 郵便을 통하거나, 州相互間 또는 外國과의 交易方法, 手段에 의하여, 2人以上 사이에서 流通되고 配付되어지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理由가 있는 出出版物을 보내거나 보내도록 하는 行爲：“顛覆活動 統制委員會의 最終命令이 共產主義者 _____ 團體(_____)에는 사안에 따라 ‘行動’, ‘戰線’, ‘浸透’를 特定)라고 判定한 團體인 _____ (_____에는 그 名稱을 特定)에 의한 配布”； 또는 _____

(2) 다음 陳述이 先行되지 않는 한, 미합중국내 放送, TV를 통해 어떤 事態를 放送하거나 放送하도록 하는 것； “다음 프로그램은 顛覆活動 統制委員會의 最終命令이 共產主義者 _____ 團體(_____)에는 사안에 따라 ‘行動’, ‘戰線’, ‘浸透’를 特定)라고 判定한 團體인 _____ (_____에는 그 團體名稱을 特定)가 後援을 하고 있다”； 또는 _____

(3) 그 要請이 口頭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陳述이 先行되고, 書面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書面陳述이 先行되지 않는 한 金錢, 財產, 物件 또는 便宜提供을 요청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郵便 또는 라디오와 TV 放送등 州相互間 또는 外國과의 交易手段, 施設, 機具를 사용하는 行爲：“이 要請은 顛覆活動 統制委員會의 最終命令이 共產主義者 _____ 團體(_____)에는 사안에 따라 ‘行動’, ‘戰線’, ‘浸透’를 特定)라고 判定한 團體인 _____ (_____에는 團體名稱을 特定)의 利益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第790條(稅金控除 및 免除拒否) (a) 他 法律 條項에도 불구하고
寄附當時 그 團體가 共產主義者 行動團體, 共產主義者 戰線團體
또는 共產主義者 浸透團體라고 判定한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실
제로 있는 경우, 그 團體에 대한 寄附 또는 그 團體의 使用을
위한 寄附에 있어, 어떤 目的으로도 聯邦所得稅 控除가 허용되
지 아니한다.

(b) 課稅期間 중 그 團體가 共產主義者 行動團體, 共產主義者 戰
線團體 또는 共產主義者 浸透團體라고 判定한 委員會의 最終命
令이 實際로 있는 경우 그 團體는, 同 課稅期間 동안 1954年的 內國稅
法 第501條에 의거한 聯邦所得稅의 免除를 받을 權利가 없다.

第791條, 第792條(各 1973. 6. 30. 削除)

第792 a條(委員會의 最終命令; 勞動團體)

(a) ~ (g) (各 1973. 6. 30. 削除)
(h) (勞動團體에 의한 긍정적 判定命令의 效果) 勞動團體가 共
產主義者 行動團體, 共產主義者 戰線團體 또는 共產主義者 浸透
團體라고 判定한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실제로 있는 경우 그
勞動團體는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할 수 없다.

(1) 改正된 全國勞動關係法 第7條의 意味와 目的範圍內에 해당
되는, 被傭者의 代表者로서 行動하는 行爲

(2) 同法 第9條에 따른 協商機構에서 유일한 被傭者 代表者로
奉仕하는 行爲

(3) 同法 第10條에 의하여 告發, 審理를 하거나 받아들이는 行
爲; 또는

(4) 同法이 勞動團體에 부여한 他 權利 또는 特權을 行使하거
나, 實質的이거나 節次의이거나를 불문하고 利益을 提供받는
行爲

(i) (全國勞動關係法에 따라 公認된 勞動團體; 긍정적 最終命令
에 의해 提起된 問題; 節次) 特定 勞動團體가 共產主義者 浸
透團體라고 判定한 委員會命令이 最終的이고, 그 이전까지 그
勞動團體가 改正된 全國勞動關係法에 의해 協商機構에서 被傭者
代表者로 公認되어 온 경우

(1) 同法 第9條 (c) 項의 意味範圍內에 해당하는 交易에 영향
을 미치는 代表性의 問題는 그 協商機構에 한하여 存在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2) 全國勞動關係委員會는 그 協商機構의 被傭者 또는 代理人
20/100 以上的 請願이 있는 경우 同法 第9條에 의하여(그
時間的 限界에도 불구하고)

(A) 共同協商目的을 위한 代表者 選擇을 위하여, 그리고
(B) 被傭者들이 同法 第8條 (a)項 (3)號 (ii)에 의하여 使用者
와 協議를 할 수 있도록 종전부터 그 勞動團體에 부여된
권한을 廢止하기를 원하는지를 決定하기 위하여
그 協商機構 또는 그 支部의 選舉를 指導·監督한다.

(j) (긍정적으로 判定한 命令의 使用者에 대한 效果) 共產主義
者 浸透團體라고 判定한 委員會의 最終命令이 실제로 있을 때,
그 使用者は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할 수 없다.

(1) 改正된 全國勞動關係法 第9條에 따른 選舉의 請願을 하

거나, 同 條項에 의거한 節次에 參加하는 行爲; 또는

(2) 同法 第10條에 의하여 告發, 審理를 하거나 받아 들이는 行爲; 또는

(3) 同法이 부여한 他權利 또는 特權을行使하거나 實質의거나 節次의이거나를 불문하고 利益을 제공받는 行爲

第793條(1973. 6.30. 削除)

第794條(罰則) 이 法 第789條에 違反한 團體는 그 有罪評決에 의하여 매 違法行爲에 대해 10,000불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法의 第785條 또는 第790條에 違反한 자는 그 有罪評決에 의하여 매 違法行爲에 대해 10,000불 이하의 罰金 또는 5年以下の 懲役에 處하고 同 罰金刑과 懲役刑은 併科할 수 있다.

第795條(行政訴訟規定의 適用 可能性) 이 法規의 어느 條項도 委員會가 이 法에 의하여 機能發揮, 節次進行을 하는데 行政訴訟法 規定의 適用을 排除하도록 할 수 없다.

第796條(他刑事法規에 대한 이 法의 效果) 이 法의 前述한 條項들은 現存하는 刑事法規들의 改正이 아니라, 同 法規들에 추가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한다.

第797條(安全規則과 命令; 罰則) (a) 國防部長官 또는 그가 지정한 軍司令官, 國家航空諮詢委員會委員長이 陸·海軍 航空機, 空港, 空港施設, 함정, 港口, 부두, 선창시설, 基地, 要塞, 우체국, 研究所, 역, 차량, 장비, 폭발물 기타 國防部와 그 傘下 部·局, 또는 同 部·局의 官吏 및 職員, 國家航空諮詢委員會 또는 그 소속, 官吏 및 職員의 관할·지배 또는 위험·화재 방지,

기계장치, 경계시설의 파손, 폐지 또는 그곳으로의 潛入 및 그 곳으로부터의 脫出, 要人除去, 우연한 또는 적의 活動·怠業·기타 順覆活動에 의한 파괴·상실 또는 손상으로부터 安定保護를 확보하는데 관하여, 公布하고 承認한 規則과 命令을 故意로 違反하는 자는 輕犯罪의 罪責을 지며, 그 有罪評決에 따라 5,000불 이하의 罰金 또는 1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同 罰金刑과 懲役刑은 併科할 수 있다.

(b) 위와같은 모든 規則, 命令은 눈에 띄면서도 적절한 場所에掲示되어야 한다.

第798條(留意事項) 이 法 中 어떤 條項도 軍事 또는 民間 檢閱을 공인하고 요구하거나 確立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美合衆國 憲法이 保障하고 있는 言論出版의 自由를 制限, 侵害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效果를 나타내는 어떤 規則도 이 法에 근거하여 公布될 수 없다.

共產主義者 統制法 (Communist Control Act)

(1954. 8.24. 制定)

* USC(美合衆國法典) Title 50 (War and Defense) Chapter 23에서 발췌

第841條(立法의 必要性) 議會는 미합중국 共產黨이 비록 政黨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합중국 政府 전복 음모 手段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政黨이 누리는 權利와 特權을 要
求하지만 憲法이 보장하는 自由를 부정하면서 共和國內에 全體
主義的 獨裁政權을 수립한다. 公共手段을 통해 多樣한 個個의
輿論를 調整함으로써 政策과 綱領을 開發하고, 그 政策과 綱領
을 有權者에게 全體로서 제시하여 賛成 또는 反對를 기다리는
他 政黨들과 달리, 共產黨의 政策과 綱領은 外國의 世界 共產主
義運動 指導者에 의해 은밀하게 規定되고 있다.

共產黨員은 黨의 目標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役割을 못하고 있고 黨 目標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수도 없다. 他 政黨員과는 달리 共產黨員들은 目標와 方法에 따른 教理注入을 위해 募集되며, 그들의 首領이 부여한 任務를 노예와 같이 行動에 옮기도록 組
織되고 教育되며 訓練된다. 他 政黨과 달리 共產黨은 黨과 黨員
들의 行爲에 대해 憲法 또는 法律上 制限을 인정하지 않는다.

共產黨은 숫자상으로 比較的 소수이고 合法的 政治手段에 의하여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能力에 대하여 貧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共產黨 活動에 내재된 危險은 그 수치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行爲 本質에 대한 制限을 認定하지 않고, 現在의 미합중국 政府는 궁극적으로 武力, 暴力を 포함한 모든 手段에 의하여 破滅되어야 한다는 信條에 몰두하는데서 提起되고 있다. 그러한 노선의 堅持, 敵對的인 外國權力의 代理機關으로서의 역할은 共產黨의 存在가 미합중국의 安全에 明白하고 現存하면서도 계속적인 危險이 되도록 하고 있다. 個個人들이 世界 共產主義運動 事業에 끌려 들어가 그 命令을 수행하도록 訓練되고 그 革命事業의 陰謀的 수행에 따라 指導되고 統制되는 것은 바로 그手段 때문이다. 그러므로 共產黨은 不法化되어야 한다.

第842條(共產黨, 그 繼承團體, 從屬團體의 追放) 미합중국 共產黨 또는 名稱 여하에 불구하고 그 目標와 目的의 武力과 暴力에 의하여 美合衆國政府, 各 州·準州·特別區·屬領 및 그 傘下 政治單位의 政府를 전복하는 것인 동 政黨의 繼承團體는 美合衆國과 그 傘下 政治單位의 法律의 司法權에 의거하여 組織된 法的 團體들이 누리는 諸般權利, 特權, 免除特權 중 어느것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美合衆國 또는 傘下 政治單位의 法律이 지금까지 記述한 黨과 從屬團體에 허용하여 온 諸般權利·特權·免除特權은 그 어느것도 이로써 종식된다. 다만, 이 條項 中 어떤 것도 改正된 1950 年의 國內安全法을 改正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져서는 안된다.

第843條(共產黨員과 기타 從屬團體 構成員에 대한 1950年的 國內安全法의 適用·定義) ① 故意로 (1)共產黨 또는 (2)目的·目標의 하나로 武力 또는 暴力의 使用에 의하여 美合衆國 政府 또는

州 및 그傘下 政治單位의 政府의樹立, 統制, 指揮, 장악 또는 전복을 피하는 기타團體의 目的 또는 目標를 인식하고도構成員이 되거나 그構成員으로 남는 자는“共產主義者 行動”團體의 한構成員으로서改正된 1950年 國內安全法의 모든條項과 罰則에 따른다.

(b)本條에서 “共產黨”은 現在 美合衆國 共產黨, 州 또는 그傘下組織의 共產黨 그리고 동團體의單位 또는 傘下組織으로 알려져 있는團體를 말하고 앞으로 그名稱에 변화가 있음을 불문한다.

第844條(共產黨員與否, 加入 또는 目的認識에 관한陪審員의 評決)

共產黨 기타 이 법에 規定된團體의構成員 또는加入與否, 同黨 또는團體의目的 또는目標의認識을評決함에 있어陪審員은判事의 教育에 따라起訴된자가 다음과 같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提示된證據를판단하여야 한다.

- (1) 書籍 또는 그團體의名簿·記錄·通信文 기타文書들에 그가 알기로構成員으로 올라 있는가
- (2) 會費, 拂入額, 貸付 기타形식으로 그團體에財政的貢獻을 하였는가
- (3) 그자신 스스로 어떤形態로든 그團體의規律에 따르고 있는가
- (4) 그團體의 어떤種類의命令·計劃 또는指令을 실행하였는가
- (5) 代理人, 事務員, 使者, 通信員, 主導者, 기타 어떤資格이든 그團體를 위하여行動하였다.

- (6) 그團體의計劃 또는事業을 위하여團體의幹部 기타構成員들과 협의하였나
- (7) 그가 알기로 그團體의幹部 또는構成員으로加入되었거나 그團體의幹部 또는構成員으로부터便宜提供을要請받았는가
- (8) 그團體의命令, 指令 또는計劃을 작성하고 말하거나暗號, 信號, 기타通信形式에 의해통신한적이 있는가
- (9) 그團體의目標와目的을 위하여文書, 팜프렛, 油印物, 書籍 기타出版物을준비한적이 있는가
- (10) 그團體를 위하여他人에게弘報物을郵送, 輸送, 流通, 配付, 發送하거나 기타方法으로送付한적이 있는가
- (11) 그團體의目標를 위하여충고하고助言하거나기타의方法으로그團體의幹部 기타構成員 또는他人에게情報, 提案, 勸告를傳한적이 있는가
- (12) 말, 行動, 行爲, 書面 기타方法을 통해그團體의計劃,構想, 目標 또는目的을 어느方式으로 어느정도遂行하겠다는自發的意圖를 나타낸적이 있는가
- (13) 어떤方法으로그團體의活動, 計劃, 行動, 目標기타目的에참가하였는가
- (14) 共產黨 또는 위에서規定한기타團體의構成員여부 및加入에관한위證據資料의 열거는여기에서言及한構成員여부 및加入에관한기타證據資料를調查하고 고려하는것을制限하지 아니한다.

反逆·內亂 기타 國家顛覆活動에 대한 一般條項

USC (美合衆國法典)

Title 18 (Crime and Criminal Procedure)에서 拔萃

(1948. 6.25. 制定)
1953. 6.30. 改正)

第 2381 條 (反逆) 美合衆國에 忠誠義務를 지고 있는 자로서(美合衆國 國民으로서) 美合衆國에 대한 戰端을 열거나 敵國과 通謀하여 美合衆國內外에서 敵國에게 便宜와 援助를 提供한 자는 死刑 또는 5年以上의 懲役과 10,000 弗 以上의 罰金에 處한다. 本罪를 犯한 자는 어떤 美合衆國 公職에도 취임할 수 없다.

第 2382 條 (反逆隱匿, 不告知) 美合衆國 國民이 美合衆國에 대한 反逆犯罪事實을 알고도 이를 隱匿하고 지체없이 美合衆國 大統領 또는 聯邦判事 또는 特定州의 知事 또는 州 判事에게 同事實을 告知하지 아니한 때는 7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 弗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第 2383 條 (反亂 또는 暴動) 美合衆國 國家機關이나 法律에 대항하여 反亂 또는 暴動을 開始, 遂行 또는 이에 幫助한 者 및 이들에게 便宜提供 또는 援助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本條의 罪를 犯한 者는 美合衆國 公職에 就任할 수 없다.

第 2384 條 (內亂陰謀) 美合衆國 領土內 또는 司法管轄權이 미치는 地域內에서, 2人以上이 美合衆國 政府를 武力으로 顛覆 또

는 破壞하거나, 美合衆國에 대한 戰端을 열거나, 武力으로 國家機關에 抵抗하거나, 武力으로 美合衆國 法執行을 妨害 또는 遷延시키거나, 武力으로 美合衆國 權威에 반대하여 그 財產을 奪取, 取去 또는 所有하기로 陰謀한 者는 20年以下の 懲役 또는 20,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第 2385 條 (政府顛覆教唆)

- — 美合衆國, 各州, 準州, 特別區 또는 屬領의 政府를 武力이나 暴力 또는 그 政府 公務員의 殺害에 의하여 顛覆 또는 破壞해야 할 義務, 必要性 또는 妥當性을 故意的으로 教唆, 煽動, 勸告 또는 教育시키는 者, 또는
- 위 각 정부의 顛覆 또는 破壞를 야기시킬 意思로 武力 또는 暴力으로 同 政府를 顛覆 또는 破壞해야 할 義務, 必要性 또는 妥當性을 擁護, 教唆·勸告 또는 教育시키는 油印物이나 出版物을 製作, 印刷, 編輯, 發行, 頒布, 販賣 또는 공연히 摘示한 者 및 그 未遂犯, 또는
- 武力 또는 暴力으로 위 각 政府를 顛覆 또는 破壞할 것을 教育시키거나 教唆 또는 勸告하는 團體 또는 結社를 조직하거나 이를 원조한 者 및 그 未遂犯 또는 그 結社 또는 團體의 目的을 알면서 그 結社 또는 團體에 加入하거나 그 構成員이 된 者는 20年以上의 懲役 또는 20,000 弗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 本條의 罪를 犯한 者는 有罪判決宣告日로부터 5年 동안 公

職에 취임할 수 없다. 2人以上이 本條의 罪를 犯할 것을 隱謀한 때에는 각자를 20年以下の 懲役 또는 20,000弗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 本罪를 犯한 者는 有罪判決宣告日로부터 5年間 公職에 就任할 수 없다. 本條에서 團體 또는 結社를 “組織한다” 고 함에는, 同 團體 또는 結社의 新會員募集, 新編制單位構成과 既存編成單位 및 編制組織의 再編成 또는 擴張을 포함한다.

第 2386 條 (特定團體의 登錄)

(A) 本條의,

- “法務部長官”이라 함은 美合衆國의 法務部長官을 말한다.
- “團體”라 함은 法人格 有無를 불문하고 組織, 同好會, 聯盟, 結社, 委員會, 協會, 政黨 또는 個人的 結合을 말한다. 다만 宗教, 慈善, 科學, 文學 또는 教育 目的만을 위하여 組織되고 運營되는 會社, 協會, 地域基金, 財團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政治活動”이라 함은 美合衆國 政府 또는 그 傘下機關, 州政府 또는 그 傘下機關을 顛覆 또는 武力에 의해 統制하려는 目的을 가진 活動을 말한다.
- 어떤 團體가 “民間軍事活動”에 종사하고 있다고 함은,
(1) 그 團體가 그 構成員들에게 火器 기타 武器 또는 이에 대체될 수 있는 物件 또는 軍事科學에 대한 教育

을 實施하는 경우

- (2) 그 團體가 他團體나 個人으로부터 軍事科學에 대한 教育을 받는 경우
- (3) 그 團體가 軍事活動에 종사하는 경우
- (4) 그 團體가 武器를 携帶하거나 携帶치 아니하고 軍事的 성격의 訓練이나 開兵을 하는 경우
- (5) 그 團體가 法務部長官의 判斷에 의하면 軍事行動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形態의 組織活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어떤 團體가 “外國의 統制下에 있다”고 함은,

- (1) 그 團體가 外國政府 또는 그 傘下政府機關, 外國政府 또는 그 傘下政府機關의 代理人, 代理機關, 外國의 政黨 또는 國際政治機構에 대하여 直接 또는 간접으로 現金貸付 또는 經濟的 支援을 요청하거나 同 支援을 받거나, 直接 또는 간접으로 위 機關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2) 그 團體의 緝領이 外國政府 또는 그 傘下政府機關, 外國政府 또는 그 傘下政府機關의 代理人, 代理機關, 外國의 政黨 또는 國際政治機構에 의해 決定되거나, 위 機關들과 협조하여 決定되는 경우를 말한다.

(B)(1)o 다음에 열거한 團體들은 法務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政治活動에 종사하고, 外國의 統制下에 있는 團體
 - 民間軍事活動과 政治活動 兩者에 모두 종사하는 團體
 - 民間軍事活動에 종사하고 外國의 統制下에 있는 團體
 - 그 目的 또는 目的의 하나가 武力, 暴力, 軍事力 또는 그 威脅에 의하여 政府나 그 奉下機關을 樹立, 通知, 管理, 占領 또는 頽覆하려는 것인 團體
 - 위에 해당하는 組織은 法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本條 (B)項(3)號에 규정된 事項과 書類를 포함한 登錄 書類를 法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또한, 위 登錄 書類를 提出한 날로부터 每 6個月의 期間이 경과한 30日 以內에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히 登錄한 事項과 書類가 정확하고 現在狀況에 부합되도록 補充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위 團體의 모든 任員은 宣誓하고 위 각 書類에 署名하여야 한다.
- (2)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登錄을 要하지 아니한다.
- (a) 美合衆國軍隊
 - (b) 各州, 準州, 特別區 또는 屬領의 軍隊
 - (c) 美合衆國, 準州, 特別區 또는 屬領의 法執行機關 또는 各州나 各州의 奉下機關, 그 代理機關의 法執行機關
 - (d) 美合衆國 國務部에 의하여 公認된 外國政府의 適法節 次에 따라 設立된 外交, 領事機關
 - (e) 美合衆國 退役將兵으로 구성된 國家의 公認組織 또는

그 所屬組織

- (3)○ 本條에서 規定한 登錄書類에는 다음의 事項과 書類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團體의 美國內 名稱과 所在地, 모든 支部, 分會, 加盟團體의 名稱 및 所在地
 - (b)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의 任員 및 任員의 機能을 수행하는 者의 姓名, 住所 및 國籍
 - (c) 團體構成員의 加入資格要件
 - (d) 團體의 現在 및 將來의 目的, 그 目的을 달성하는 手段 및 方法
 - (e)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의 會合場所 및 時期
 - (f)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에 대하여 資金, 不動產, 使用料, 기타 有價物을 기부한 者의 姓名 및 住所
 - (g)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의 資產, 資產取得 經緯, 負債 및 收入에 관한 상세한 說明
 - (h)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의 活動에 관한 상세한 說明
 - (i) 團體의 任員, 會員이 着用하는 制服, 배지, 기장 등 身分表示方法
 - (j)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 또는 그 會員의 承認 또는 認知下에 이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發行 또는 배포된 書籍, 小冊子, 傳單 기타 油

印物 또는 印刷物의 複寫本 및 그 著者의 姓名, 그 發行人의 姓名 및 住所

(k)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火器 기타 武器에 대한 製造番號를 明記한 설명

(l) 團體가 外國의 統制下에 있는 경우에는 그 統制를 받는 방법

(m) 團體 및 그 支部, 分會, 加盟團體의 任員의 權限 및 組織의 構成, 權限, 目的에 관련된 綱領, 規約, 規定, 內規, 決議文등의 複寫本

(n) 기타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事項 및 書類

○ 本條에 의하여 提出되는 書類는 公共記錄으로서,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閱覽이 가능하다.

(C) 法務部長官은 登錄되어야 할 事項에 관한 規定을 포함한 諸規定을 本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限 制定, 改正, 刪除할 權限을 가진다.

(D) 本條에 違反한 者는 5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과 罰金은 併科할 수 있다. 本條에 따라 提出되는 書類에 故意의으로 虛偽事實을 記載하거나, 記載가 요구되는 事項 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記載해야 할 事項을 記載치 아니한 者는 5年以下の 懲役 또는 2,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과 罰金은 併科할 수 있다.

第 2387 條 (軍隊에 一般的 影響을 미치는 活動)

(A) 美合衆國 軍隊의 忠誠心, 倫理 또는 訓練에 介入하거나 이

를 損傷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目的으로,

(1) 美合衆國 軍隊構成員으로 하여금 反抗, 不忠, 叛亂 또는 義務不履行토록 勸告, 強要하거나 기타 어떤 方法으로든 同 行爲를 야기시킨 者 및 그 未遂犯

(2) 美合衆國 軍隊構成員으로 하여금 反抗, 不忠, 叛亂 또는 義務不履行토록 勸告, 強要하는 內容의 油印物이나 印刷物을 배포한 者 및 그 未遂犯

은 10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과 罰金은 併科할 수 있다. 本罪로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 그 判決宣告日로부터 5年以内에 公職에 就任하지 못한다.

(B) 本條의 “美合衆國軍隊”라 함은, 美陸軍, 海軍, 空軍, 海兵隊, 海岸警備隊, 海軍·海兵 및 海岸警備隊 豫備軍을 포함한다. 商船이 美合衆國 海軍에 취역하고 있거나 美合衆國 海軍 또는 陸軍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 船舶의 船長 및 船員들도 이에 포함된다.

第 2388 條 (戰爭中 軍隊에 影響을 미치는 活動)

(A) 美合衆國이 戰爭遂行中,

- 美合衆國軍隊의 作戰이나 勝利를 방해하거나 敵國의 勝利를 圖謀할 目的으로 故意의으로 虛偽의 報告 또는 陳述을 하거나 이를 傳達한 者
- 故意의으로 美合衆國 軍隊內에서 反抗, 不忠, 叛亂 또는 義務不履行을 야기 또는 야기시키려 하거나, 故意의으

로 美合衆國의 募兵作業을 妨害하거나 妨害하려 하여 美合衆國 軍務에 支障을 초래한 者

는 20 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B) 2人以上이 위 (A)項의 罪를 犯할 것을 陰謀하여 그중 1人以上이 그 目的達成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각 陰謀者를 위 (A)項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

(C) 本條의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한다는 情을 알면서 또는 이를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도, 그 犯人을 隱匿한 者는 10 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D) 本條는 美合衆國 領土內 뿐만 아니라 船上等 海事管轄權이 미치는 범위에도 適用된다.

第 2389 條(利敵募兵)

- 美合衆國內 또는 그 管轄權이 미치는 地域內에서, 美合衆國에 武力對抗하기 위하여 募兵한 者 또는
- 美合衆國內 또는 그 管轄權이 미치는 地域內에서 어떤 形態로든 美合衆國에 武力對抗하기 위한 募兵事務所를 開設한 者

는 5 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第 2390 條(利敵募兵에 응하는 行爲)

美合衆國內 또는 그 管轄權이 미치는 地域內에서 美合衆國에 武力對抗하기 위한 募兵에

응한 者는 3 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 弗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同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할 수 있다.

第 2391 條(第 2388 條의 一時的 效力延長) 美合衆國 緊急權延長法 第1條 (a)項 (29)에 의해 修正되고, 美合衆國 第 83 次 國會의 公法 第 12 條에 의해 다시 修正된 本法 第 2388 條는 戰爭中 완전한 效力を 가지는 외에 美合衆國 大統領이 1950.12.16. 宣布한 國家非常事態가 끝나는 날로부터 6個月동안 또는 美合衆國 議會가 決議한 日字 중 먼저 도래하는 日字까지 완전히 效力を 유지한다. 戰爭 중 遂行되면 第 2388 條에 의해 法的 結果와 刑罰을 초래하는 行爲는 위에서 定한 期間 중에 犯하여진 경우와 같은 法的 結果와 刑罰을 초래한다.

【西 獨】

公共結社權의 規制에 관한 法律(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1964.8.5. 制定, 최종改正 1974.2.3.)

(一名, 結社法 : Vereinsgesetz)

聯邦議會는 聯邦參議院의 同意를 받아 다음의 法을 議決하였다.

第1節 一般規定

第1條(結社의 自由) ① 團體의 結成은 自由이다 (結社의 自由).

② 結社의 自由를 濫用하는 團體에 대하여서는 公共의 安全과 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本法에 의하여서만 處分을 내릴 수 있다.

第2條(團體의 概念) ① 本 法에서의 團體라 함은, 그 法的形態를 불문하고, 多數의 自然人 또는 法人이 相當期間 共同의 目的을 위해서 自發的으로 結成하고 組織的인 意思決定에 服從하는 모든 團體(jede Vereinigung)를 의미한다.

② 本 法에서의 團體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基本法 第 21 條에서 말하는 政黨

2. 獨逸聯邦議會 및 州 議會의 院內交涉團體(Fraktion)

3. 宗教團體 및 1919.8.11.의 獨逸憲法 第 137 條와 基本法 第 140 條의 範圍에서 世界觀(Weltanschauung)의 共同的 具現을 任務로 하는 단체

第2節 結社의 禁止

第3條(禁止) ① 團體는 그 團體의 目的 또는 活動이 刑法에 違反되거나 또는 그 團體가 合憲的 秩序나 國際協力의 精神에 배치된다고 禁止官廳(Verbotsbehörde)의 處分을 通過해서 確定된 경우에는 (基本法 第 9 條 第 2 項에 의해) 禁止되는 것으로 取扱된다. 處分으로 團體를 解散시킬 수 있다. 禁止(Verbot)로써 보통 團體財產의 압류(Beschlagnahme) 및 没收(Einziehung)를 할 수 있다.

② 禁止官廳이라 함은;

1. 그 認識할 수 있는 組織 및 活動이 州의 領域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의 團體 및 部分團體(Teilvereine)에 대하여서는 州 最高官廳(die oberste Landesbehörde)을 말하며

2. 그 組織 또는 活動이 州의 領域을 넘어서는 경우의 團體 및 部分團體에 대하여는 聯邦內務部長官을 가리킨다.

州 最高官廳은, 그 禁止가 어느 團體의 部分團體를 對象으로 行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禁止는 第 2 號에 따라 聯邦內務部長官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 聯邦內務部長官의 協調를 받아 決定을 내린다.

聯邦內務部長官은 第1號에 따라 部分團體의 禁止에 대해 權限을 가지게 되는 州 最高官廳의 協調를 받아 결정한다.

③ 禁止는 明示的으로 制限되어 있지 않는 한, 事實的 關係의 全體的인 外觀上 그 團體의 一部로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團體에 加入한 모든 組織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部分組織) 禁止處分에서 明示的으로 言及된 경우에는 그 禁止가 獨自의인 法人格을 가진 管轄이 아닌(nichtgebietlich) 部分組織에 까지도 미친다.

④ 禁止는 書面으로 作成하고 그 根據를 提示하여야 하며, 團體에게 또한 第3項 2文의 경우에는 部分組織에게도 送達하여야 한다. 禁止의 處分의 部分은 聯邦公報와 아울러 諸州의 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禁止는 送達함으로써, 늦어도 聯邦官報에 揭載함으로써 效力を 발생하며 執行할 수 있다. 行政法院法(Verwaltungsgerichtsordnung) 第80條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第4條(調查) ① 禁止官廳은 그 調查를 위해 公共의 安全 또는 秩序維持의 主務官廳 및 官署에 協力を 요청할 수 있다. 聯邦內務部長官의 調査要請은 당해 州 最高官廳에 하여야 한다.

② 禁止官廳 또는 第1項 1文에 의거 要請을 받은 機關이 法官에 의한 證人訊問, 證據物(Beweismittel)의 押收 또는 搜索이 필요하다고 判斷하는 경우 그 機關은 事件을 審理할 權限이 있는 行政法院에 그 申請을 한다. 同法院의 長 또는 그가 指定한 判事が 命令 또는 措置를 내린다.

③ 證人에 대한 法官의 訊問에 대해서는 行政法院法 第98條가 適用된다.

④ 重要한 證據物의 押收에 대해서는 刑事訴訟法 第94條 내지 第97條, 第98條 第4項 및 第99條 내지 第101條가 적용된다. 그러한 證據物의 發見을 위해서 搜索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根據가 있는 경우에는 그 團體의 場所 및 그 團體의 構成員 또는 後援者(Hintermann)의 場所, 事物과 身體에 대한 搜索이 행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身體에 대한 搜索은 一定한 證據物의 押收를 위해서만 또한 搜索對象物을 그가 보관하고 있다는 事實이 證明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刑事訴訟法 第104條, 第105條 第2項 내지 第4項과 第106條 내지 第110條가 適用된다.

⑤ 遲滯하면 危險한 경우에는 禁止官廳 또는 第1項 1文에 의거 요청을 받은 機關이라 할지라도 刑事訴訟法 第99條에 의한 押收를例外로 하고는 押收 또는 搜索을 할 수 있다. 刑事訴訟法 第98條第2項 1文 및 2文과 第4項의 規定들이 適用된다. 베를린 州에서는 權限있는 베를린의 州 官廳이 그러한 押收 또는 搜索을 한다.

第5條(禁止의 執行) ① 本法에 따른 禁止가 禁止官廳 자신이나 第10條 第3項 및 第11條 第3項에 의거 禁止當局에 의해 委任을 받은 機關에 의해서 執行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는 州 政府가 지정한 官廳에 의해서 執行된다.

② 第8條 第2項 1文에 의거 다른 禁止官廳이 발한 禁止 또는 處分 및 團體財產의 押收, 没收, 管理 또는 清算에 대한 命令 또

는 處分은 베를린주에 있어서 베를린의 上院이 第8條 第2項 1文에 따른 禁止 또는 處分을 베를린 주에 까지 擴張한다고 決定한 경우 權限 있는 베를린 주 官廳을 통해 執行된다.

③ 部分團體의 禁止가 取消될 수 없게 되기 전에 그 部分團體를 포함하는 全體團體 (Gesamtverein)의 禁止가 그 部分團體의 禁止 이후에 취해진 경우에는 이 時點으로부터 오직 全體團體의 禁止만을 執行할 수 있다.

第6條(禁止執行의 取消) ① 禁止의 執行을 위한 措置가 取消되고 그 決定이 그 禁止가 合法的인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 行政法院은 그 禁止의 合法性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그 禁止가 取消할 수 없는 것으로 決定될 때 까지 節次를 中止하고 그의 決定에 이러한 結果를 기초로 해야만 한다.

② 禁止의 執行을 위한 措置에 대한 異議와 取消의 訴는을 아무런 停止的 效力도 갖지 아니한다.

第7條(禁止의 取消不能 및 公用 登記簿에의 登錄) ① 禁止가 取消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處分의 내용은 그 取消不能 (die Unanfechtbarkeit) 과 관련하여 聯邦公報와 諸州의 官報에 再次掲載하여야 한다.

② 團體 또는 部分團體가 公用登記簿에 登錄된 경우, 禁止官廳의 通知에는 團體財產의 押收 및 그 取消 (Aufhebung), 管理人의 選任과 解任 (第10條 第3項), 禁止가 取消할 수 없게 된 후의 團體의 解散 그리고 團體의 消滅 (Erlöschen) 등의 事項이 기재되어야 한다.

第8條(代替結社의 組織禁止) ① 이 法에 의하여 禁止되는 結社가 그 대신 憲法違反의 企圖 (verfassungswidrige Bestrebungen) (基本法 第9條 第2項)를 계속 遂行하는 結社를 組織하거나 現在의 結社를 代替結社로 繼承시키는 것은 禁止된다.

② 代替結社가 禁止된 結社의 代替組織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法의 의미에서의 代替結社에 대하여서는 特別한 處分 (Verfügung)을 根據로 하여야만 第1項에 속하는 禁止의 行政的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3條 내지 第7條 및 第10條 내지 第13條는 동등한 效力を 가진다. 處分에 대한 抗告訴訟 (Widerspruch) 및 이의 (Anfechtungsklage)는 停止的 效力を 가지지 아니한다. 禁止官廳이 2週內에 第1項의 處分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官廳과 機關은 지체하면 危險한 때에는 公共의 安全이나 秩序維持를 위하여 臨時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9條(標識禁止) ① 禁止된 結社의 標識는 繼續的인 禁止의 執行을 위하여

1. 公然히 集會에서 또는
2. 流布되거나 流布가 豫定된 著作物, 放送, 圖解 또는 公演에 使用될 수 없다. 公共의 啓蒙, 憲法違反 企圖의 防止 및 類似한 目的의 範圍內의 標識의 使用은 허용된다.

② 第1項에서 말하는 標識는 특히 旗 (Fahnen), 徽章 (Abzeichen), 制服 (Uniformstücke), 標語 (Parolen) 및 敬禮形式 등이다.

③ 이 規定은 第8條 第2項 1文에 의한 繼續적인 處分의 執行

을 위하여 代替結社의 標識의 使用에도 適用된다.

第3節 禁止된 結社의 財產에 대한 押留 및 没收

- 第10條(財產의 押留)** ① 押留(第3條 第1項 2文)는 讓渡禁止의 効力を 가진다. 讓渡禁止를 違反하는 法律行爲는 相對方이 法律行爲가 관련된 對象(Gegenstand)이 押留下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음에 틀림없는 경우를 除外하고 無効이다. 押留는 結社가 第3者에게 信託하거나 第3者가 受託者로서 結社를 위하여 취득한 物件에도 미친다. 3文의 경우에는 無權利者로부터 由來한 權利를 위한 規定은 同等하게 適用된다.
- ② 押留에 근거하여 結社가 보관하고 있는 物件(Sachen)과 特別規定에 근거하여 第3者가 保管하고 있는 物件은 擔保로 提供될 수 있다. 擔保의 目的上 필요한 限 잠긴 문과 켤레를 열고 室內에 들어갈 수 있다. 事前豫告 또는 시한설정이 擔保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直接強制를 行한다.
- ③ 禁止官廳은 押留된 財產을 위하여 管理人(Verwalter)을 任免할 수 있다. 管理人은 禁止官廳의 指示를 받는다.
- ④ 理事(Vorstandsmitglieder)는 結社財產의 殘高와 所在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理事는 禁止官廳의 요구에 의하여 殘高의 明細를 提出하고 宣誓하여야 한다. 宣誓는 民法 第260條 第2項에 規定된 취지로 禁止官廳의 요청에 따라 當該區裁判所 앞에서 行하여져야 한다.

⑤ 押留의 取消는 押留의 執行猶豫 및 更新과 마찬가지로 遷及效가 없다.

第11條(財產의 没收) ① 没收(第3條 第1項 2文)는 第3條 第2項 1文의 경우에는 聯邦을 위하여 命하여진다. 没收는 擔保를 위하여 結社가 第3者에게 讓渡한 財產을 除外하고는 押留된 財產에도 效力이 미친다.

② 禁止 및 没收命令

沒收收益者는 結社의 財產과 第1項 第2文에 의하여 押留된 客體를 特別財團(besondere Vermögensmasse)으로 取得한다. 法形式에 있어서 結社(Verein), 組合(Gesellschaft) 또는 財團(Stiftung)의 部分組織(Teilorganisation)에 속하는 客體는 獨立한 財團(eigene Vermögensmasse)을 構成한다. 結社 및 没收와 관련된 部分組織은 效力を 상실한다. 그 法律關係는 没收節次에 의하여 清算된다.

③ 聯邦內務部長官은 禁止官廳으로서 没收의 執行과 清算을 聯邦行政官廳 또는 기타의 聯邦官廳에 委任할 수 있다(沒收官廳). 第10條 第3項은 그대로 效力を 가진다.

委任은 聯邦官報 및 諸州의 官報에 公表된다.

④ 禁止官廳은 基本法 第9條 第2項에 規定된 種類의 行爲나 企圖를 새로이 조장하는데 結社의 財產이 使用되거나 財產分割이 結社의 組織的結合을 유지하는데 濫用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소한 價值의 客體에 關한 限 没收를 中止할 수 있다. 禁止官廳은 清算을 명할 수 있다. 第12條 第1項 1文은 清算額(Li-

quidationserlös) 請求에 適用된다.

第12條(第3者의 權利客體에 대한 没收) ① 禁止當局 또는 没收當局은 다음 각號의 경우에 公共團體에 대한 第3者의 債權을 没收한다.

1. 당해 債權이 方法・範圍 또는 目的에 있어서 團體의 違憲的 意圖에 의한 고의적인 債權임이 분명한 관계에서 비롯하는 경우

2. 當局의 押留로부터 團體의 財產을 도피시킬 目的으로 또는 團體의 財產價值를 減少시킬 目的으로 債權이 成立하였을 경우

債權者가 그러한 債權을 讓渡를 통하여 획득하였다면 그 債權은 債權者가 第1文에 規定된 事項들을 債權 取得時에 인지하였을 경우에 限하여 没收할 수 있다.

② 公共結社의 保護下에 있는 第3者의 物件은 債權者가 讓渡를 통해서 公共結社의 違憲的 企圖를 故意로 行하였을 경우에 没收될 수 있다.

③ 第11條 第1項, 第12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没收된 客體 위에는 第3者의 權利가 存在한다. 이 權利는 第1項에 規定된 條件下에 발생하였거나 취득된 경우에는 剝奪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没收된 客體는 禁止 및 没收規定에 特別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没收 受託人에게 인계된다. 인계되지 않는 權利는 消滅된다.

⑤ 禁止의 解止前 6個月 以內에 公共結社 財產의 客體를 處分

하기 위하여서 다른 目的으로 規定된 公共結社의 法規는 没收受託人에게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破產法 第31條 第2號에 規定된 公共結社의 特定會員이나 그 자신의 親族을 위하여 當該法規가 規定된 경우는 第1文에 規定된 事項을 認知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第13條(清算) ① 禁止當局 또는 没收當局에 의하여 設定된 除斥期間 以內에 자신의 債權을 申告한 債權者들은 特別破產財團으로부터 免除를 받아야 한다. 法律에 特別히 規定되어 있지 않는 限 破產時에 破產債權이 될 債權의 번제는 没收된 財產의 賣却이 모든 債權者의 번제를 위하여 破產財團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除斥期間내에 申告되지 아니한 債權은 消滅한다.

② 禁止當局이나 没收當局은 부당함, 가혹함을 피하기 위하여 第11條 第1項 2文에 따라 발생한 權利喪失의 保留를 命令하거나 또는 第12條에 의한 没收를 中止할 수 있다.

③ 特別破產財團에 대한 모든 請求權의 履行을 위하여 財產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 禁止當局이나 没收當局의 提請에 따라 特別破產財團에 대한 破產節次가 行하여진다. 第12條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押留(第3條 第1項 第2文)로 말미암아 발생한 行政費用과 權利抗辯의 請求를 통한 禁止로 말미암아 발생한 公共結社의 訴訟費用은 破產財團 費用으로 간주되고 行政債務은 破產財團 債務로 간주된다. 破產執行者は 禁止當局이나 没收當局의 提請에 따라 破產審判官에 의해 任免된다. 破產法 第81

條, 第 87 條 내지 第 92 條, 第 101 條, 第 125 條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特別破產財團에 대한 請求權을 履行한 이후의 殘餘財產과 第 12 條에 의하여 没收된 客體는 没收 受託人에 의해 公共의 目的에 사용되어야 한다.

第 4 節 特 別 規 定

第 14 條(外國人 公共結社) ① 그 構成員이나 管理者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國인 外國人公共結社는 基本法 第 9 條 第 2 項에서 規定한 理由를 이외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그것이 政治的 活動을 통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이나 各 州의 內外의인 安全保障, 公共秩序 또는 그 밖의 중대한 利害를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禁止된다.

② 그밖에 外國人 公共結社는 法律規定에 따라 公共安定이나 公共秩序의 보장을 理由로 하여 制限되지 아니한다.

第 15 條(外國의 公共結社) ① 그 組織이나 活動이 이 法의 空間의인 效力이 미치는 外國에 그 住所를 둔 外國의 公共結社는 第 14 條가 適用된다. 이에 대한 禁止는 聯邦內務部長官의 所管이다.

② 그 構成員과 管理人的 全部 또는 大部分이 獨逸人인 外國의 公共結社와 그러한 外國의 公共結社에 소속된 支社는 基本法 第 9 條 第 2 項에 規定된 理由에 의하여서만 禁止되거나 禁止될 수

있다.

第 16 條(被雇傭人 및 使用者의 團結) ① 團結의 自由 및 團結權保護에 관한 1948 年 6 月 9 日 國際勞動機構(ILO) 約定 第 87 號의 保護를 받고 있는 團結에 대한 第 3 條 第 1 項에 의한 禁止 또는 第 8 條 第 2 項 第 1 文에 의한 措置는 法院이 그 合法性을 확인하는 경우에 優先的으로 有效하다. 第 3 條 第 4 項, 第 8 條 第 2 項의 第 2 文 및 3 文은 適用되지 아니한다.

② 禁止當局은 行政法院法 第 48 條 및 第 50 條 第 1 項 第 1 號에 따라 管轄法院에 文書로 作成되고 認證된 決定을 提示하여야 한다.

③ 法院이 追認을 不許하는 경우 法院은 判決에서 同時에 禁止 또는 處分을 撤回한다.

④ 禁止官廳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은 필요한 假命令을 내릴 수 있고, 특히 結社財產의 押留를 指示할 수 있다. 法院은 第 3 條 第 4 項 2 文에 의거하여 活動禁止 및 押留命令을 내려야 한다.

第 17 條(資本會社·協同組合·相互保險會社) 이 法의 規定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株式會社·株式合資會社·有限責任會社·協同組合 및 相互保險會社에 適用한다.

1. 그것들이 憲法秩序에 반하거나 國民의 分別 있는 思考에 반하는 것을 目標로 설정하거나 또는 그 目的이나 活動이 國家의 방어를 위하여 公布된 刑罰法規에 반하는 경우
2. 그것들이 第 1 號에 言及된 근거로 公布된 禁止에 의하여 第 3 條 第 3 項에 의하여 그 組織의 一部로 간주되는 경우

3. 그것들이 第1號에 言及된 근거로 禁止된 結社의 代替組織
인 경우

第18條(結社禁止의 場所的 效力範圍) 이 法의 場所的 效力範圍
밖에 所在하는 結社로서 그 組織의 一部가 이 範圍內에 있는
경우에 結社의 禁止는 이 場所的 範圍 안에 있는 그 組織의 一
部에 미친다. 그 結社가 이 法의 場所的 效力範圍 안에 어떠한
組織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禁止(第3條 第1項)는 이
範圍 안에서의 活動에 미친다

第5節 最終規定

第19條(法規命令)聯邦政府는 聯邦議會의 同意를 얻은 法規命令
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할 수 있다.

1. 禁止의 執行 특히 結社의 解散의 執行·押收의 執行과 解除
및 押收中인 結社財產의 管理에 관한 決定을 내릴 수 있다.
2. 没收의 節次, 除斥期間(第13條 第1項 1文), 債權者의 期
限 到來的 滿足(第13條 第1項 2文), 第13條 第2項의 適用
또는 土地登記簿의 更正에 관한 決定을 내릴 수 있고 没收
時에 特別한 사설에 適合한 特別한 財產에 대한 破產을 상세
히 規制할 수 있다.
3. 没收된 財產의 使用을 상세히 規定할 수 있다.
4. 外國人 結社와 外國의 結社에 대하여 申告 및 通知義務를
명하고 그 申告의 內容·形式 및 節次에 관한 規定을 定

하고 그 申告義務를 상세히 規定할 수 있다.

第20條(禁止의 違反) ①이 法의 場所의 效力範圍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年以下의 自
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 그 行爲가 刑法 第84條, 第
85條, 第86條 또는 第129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行爲로서 可
罰的인 行爲인 경우에 限한다.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
9條 第1項 2文 및 第2項을 準用한다.

1. 執行할 수 있는 禁止에 또는 禁止된 團體의 代替組織이라
는 執行할 수 있는 確定에 반하는 結社의 組織的 結合을 유
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結社의 構成員으로 活動하는 자
2. 禁止된 團體의 代替組織이라는 執行할 수 있는 確定에 반하여
政黨이나 結社의 組織的 結合을 유지하거나 또는 당해 政黨
이나 당해 結社에서 構成員으로 活動하는 자
3.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結社나 政黨의 組織的 結合을
支援하는 자
4. 第18條 2文에 의하여 執行할 수 있는 禁止에 違反하는 자
5. 禁止 또는 確定의 執行中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結社나
政黨의 표장을 撒布하거나 공연히 集會에서 이를 使用하는 자
②法院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第1號에 의한 刑罰
을 중지할 수 있다.
 1. 關係者의 債務가 輕微하거나 또는 그 協力이 2次의 의미인
경우
 2. 그 行爲者가 政黨 또는 結社의 存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발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努力하는 경우, 그가 이러한 目的 을 達成하거나 또는 자신의 努力 없이 그 目的이 達成되는 경우 그 行爲者는 處罰받지 아니한다.

③ 第1項 第5號에 따른 犯行과 관련한 표장은 没收할 수 있다.

第21條(法規命令에 반하는 違反行爲) ① 故意 또는 過失로 第19條 第4號에 의거하여 公布된 法規命令의 規定에 반하는 行爲를 하는 자는 特定한 構成要件을 目的으로 한 法規命令이 이 罰金 規定을 指示하는 경우, 法規違反이다.

② 法規違反에 대하여는 2천 마르크 以上의 罰金에 處할 수 있다.

第22條—第29條 (第22條 내지 第29條는 部分의으로 時代에 뒤떨어진 STGB, BGB, FGG, StPO, GVG, BVerf GG 및 Versammel G의 變更을 담고 있다.)

第30條(法規의 廢止 및 存續) ① 다음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1. 1916年6月26日의 法律(帝國法律公報 s.635)에 지칭되어 있는 1908年4月19日의 結社法(帝國法律公報 s.151)
2. 結社運動에 관한 1899年12月11日의 法律(帝國法律公報 s.699).

3. 國內安全의 維持를 目的으로 한 1932年12月19日의 大統領令(帝國法律公報 I S.548)

4. 民法典採擇法 第10條
5. 結社運動에 관한 1955年7月8日의 Saarland法律 Mr.458 (結社法)의 第1 및 III章(Saarland 관보 S.1030). 다만, 西獨基本法 第21條에서 뜻하는 政黨에 관한 規定은 예외로 한다.

② 다음의 法令은 무관하게 存續한다.

1.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9條 第2項
2. 民法典 第43條 및 第44條
3. 有限公司會社에 관한 法律 第62條, 株式法 第288條 내지 第293條, 營業 및 經濟團體에 관한 法律 第81條, 保險監督法 第87條 및 信用制度에 관한 法律 第38條 第1項
4. 獨逸聯邦內의 難民의 法的地位에 관한 1951年4月25日의 法律 第13條(聯邦法律公報 IS.269)
5. 外國團體 및 海外에 있는 團體에 관한 特別規制를 目的으로 한 國家間 協定

第31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前에 착수된 結社關係 判決에 관하여는 現在까지 效力を 지니고 있는 規定들이 適用된다.

② 이 法의 第8條, 第9條 및 第20條와 이 法 第22條 第3項에 지칭되어 있는 刑法 第90b條는 이 法 施行前에 어떠한 結社가 禁止되어 있는 경우에도 適用한다.

③ 어떠한 結社든지, 聯邦行政裁判所 또는 州 上級 行政裁判所가 基本法 第9條 第2項에 따라 당해 結社를 禁止함을 確定지은 경우, 이 법 第22條 第3項에 지칭되어 있는 刑法 第90 b條의 취지에 비추어 확실히 禁止된다.

④ 1951年8月30日의 刑法改正法(聯邦法律公報 IS.793)에 지칭되어 있는 刑法 第129 a條 第3項에 따른 法節次는 이 法 施行과 동시에 終了한다. 裁判費用은 廢止되지 아니하며 모든 당사자는 裁判外費用을 부담한다.

第32條(基本權의 制限) 信書 및 郵便의 秘密에 관한 基本權(基本法 第10條) 및 住居不可侵(基本法 第13條)은 이 法에 근거한 措置에 의하여 제한된다.

第33條(베를린州에서의 效力) ①이 法은 1952年1月4일의 第3移轉法(聯邦法律公報 IS.1) 第13條 第1項의 措置에 의하여 베를린州에서도 效力を 가진다. 다만, 이 法 第22條 第2項 및 第28條에 지정되어 있는 刑法 第90條 第1項, 2項 및 第4項은 베를린州에서 效力を 가지지 못한다.
②이 法에 根據하여 허용된 法令은 第3者 移轉法 第14條에 의하여 베를린州에서 效力を 가진다.

第34條(施行)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1個月 후에 發效한다.
(이 法은 1964年8月12日에 公布됨)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SÄUZE)

略稱：集示法(VERSAMMLUNGSGESETZ)

(1953年7月24日 制定)
(1985年7月18日 最終改正)

第1章 總則

- 第1條〔集會의 自由〕** ① 누구든지 公共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하거나 이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② 다음 사람은 이러한 權利를 가지지 못한다.
1. 基本法 第8條에 의해 集會의 自由에 관한 基本權이 剝奪된 者,
2. 위와 같은 開催를 遂行하거나 이에 參與함으로써 基本法 第21條 第2項에 의해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하여 違憲이라고 宣言된 政黨 또는 그 部分 내지 代替組織의 目的하는 바를 助長코자 한 者,
3. 基本法 第21第 第2項에 의거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하여 違憲이라고 宣言된 政黨 또는 本法 第9條 第2項에 의하여 禁止된 團體

- 第2條〔秩序있는 遂行의 保障〕** ① 公共集會 또는 示威에 公共연히 招請하는 者는 開催者로서 그 이름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秩序있는 遂行을 紊亂케 할 目的의 妨害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官廳의 許可를 받음이 없이 武器 또는 그 用途上 사람에게 被害를 입하거나 財物을 損壞하는데 適合하고도 特定된 器物을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官廳의 許可없이 武器 또는 第 1 段에서와 같은 器物을 開催地에 운반하거나 혹은 開催時 사용하고자 準備하거나 배포할 目的으로 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所持하는 것도 역시 禁止된다.

第3條〔制服의 禁止〕 ① 공공연히 혹은 일정한 集會에서 共同의 政治的 信念의 表現으로서 制服, 制服의 部分 또는 그러한 類의 의복을 着用하는 것은 禁止된다.

② 青少年善導를 主目的으로 하는 青少年協會에 대하여는 申請이 있을 때 그 構成員들을 위하여 第 1 項에서 禁止하는 바를 예외적으로 許可한다. 그 識別可能한 組織 또는 活動範圍가 州의 領域을 넘어서는 青少年協會에 대한 管轄은 聯邦內務部長官에, 그렇지 않으면 州의 最高官廳에 있다. 聯邦內務部長官의 決定은 聯邦告示 및 共同部報로, 州 最高官廳의 決定은 그 官報로 公告하여야 한다.

第4條〔削除〕

第2章 屋內公共集會

第5條〔集會의 禁止〕 集會의 舉行은 個別的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禁止된다. 즉,

1. 開催者가 第 1 條 第 2 項 第 1 號 내지 第 4 號에 해당하고, 第 4 號의 경우 그 禁止가 管轄行政官廳에 의하여 確定될 경우

2. 集會의 開催者 또는 主管者가 武器 또는 第 2 條 第 3 項에서 말하는 器物을 所持한 者들의 立場을 容認한 경우

3. 開催者 또는 그 一派가 集會의 暴力的이고 騷擾的인 進行을 助長한다는 사실이 確認된 경우

4. 開催者 또는 그 一派가 重犯 또는 職權上 訴追될 수 있는 輕犯을 주제로 한 意見을 代表하거나 또는 그 意思表示를 뮤인한다는 사실이 確認된 경우

第6條〔參與者 範圍의 制限〕 ① 特定人物들 또는 人的 階層에 대하여는 招請時 集會에의 參與가 배제될 수 있다.

② 言論人們은 排除될 수 없다. 그들은 集會의 主管者에게 身分證으로써 秩序있게 身分을 證明하여야 한다.

第7條〔主管者〕 ① 모든 公共集會에는 한 名의 主管者が 있어야 한다.

② 集會의 主管者は 開催者이다. 集會가 團體에 의하여 開催되는 경우에는 그 代表者가 主管者이다.

③ 開催者は 그 主管을 第 3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 主管者は 家宅紀律權을 行使한다.

第8條〔主管者の 權利 및 義務〕 主管者は 集會의 經過를 決定한다. 그는 集會가 進行되는 동안 秩序를 보살펴야 한다. 그는 集會를 언제라도 中斷하거나 終結할 수 있다. 그는 中斷된 集會가 繼行되는 時期를 決定한다.

第9條〔整頓者〕 ① 主管者は 第 8 條에 揭記된 權利를 遂行함에 있어서 적당한 數의 名譽職 整頓者들의 도움을 活用할 수 있다.

이들은 武器 또는 第 2 條 第 3 項에서 말하는 器物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成年에 달하여야 하고, “정돈자”라고 表示된 흰 腕章을 둘러 識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主管者は 자신이 任命한 整頓者들의 數를 警察의 要求時 通報할 義務가 있다. 警察은 整頓者들의 數를 적절히 減縮할 수 있다.

第 10 條 (參與者들의 義務) 모든 參與者들은 主管者 또는 그로부터 任命된 整頓者들의 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指示에 응할 義務가 있다.

第 11 條 (參與者들의 排除) ①主管者は 秩序를 현저히 害하는 參與者들을 集會로부터 排除할 수 있다.

②集會로부터 排除된 者는 그 즉시 集會場所를 떠나야 한다.

第 12 條 (集會에서의 警察) 警察公務員은 公共集會에 出席되었을 경우 主管者에게 그 身分을 밝혀야 한다. 그들에게는 적당한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第 13 條 (警察의 解散權) ①警察 (第 12 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理由提示下에 集會를 解散할 수 있다. 즉,

1. 開催者가 第 1 條 第 2 項 第 1 號 내지 第 4 號에 해당하고, 第 4 號의 경우 그 禁止가 管轄行政官廳에 의하여 確定된 경우

2. 集會가 暴力的 또는 騷擾的인 方法으로 進行되거나 參與者들의 生命과 健康에 직접적인 위험이 存在하는 경우

3. 主管者が 武器 또는 第 2 條 第 3 項에서 말하는 器物을 소지한 者들을 즉시 排除치 아니하고 그 排除의 實行을 소홀

히 하는 경우

4. 集會의 進行을 통하여 重犯 또는 職權上 訴追될 수 있는 輕犯의 行爲로서 刑法에 저촉되거나, 혹은 集會에서 그러한 犯罪行爲가 挑發되거나 鼓舞되고 主管者が 이를 즉시 制止치 아니하는 경우

위 第 2 號 내지 第 4 號의 경우에는 다른 警察的 措置, 특히 中斷措置로서는 충분치 않을 경우에만 解散이 허용된다.

②集會가 解散되었다고 宣言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參與者는 集會場所를 떠나야 한다.

第 3 章 屋外公共集會 및 示威

第 14 條 (申告義務) ①屋外公共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하고자 하는 者는 늦어도 48 時間以前에 管轄官廳에 集會 또는 示威 對象을 摘示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申告時 누가 集會 또는 示威의 主管責任者인가를 摘示하여야 한다.

第 15 條 (禁止 및 警察의 解散) ①管轄官廳은 그 處分時 認識可能한 事情에 의거 集會 또는 示威의 舉行으로 인하여 公共의 安全과 秩序가 直接的으로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集會 또는 示威를 禁止하거나 特定한 負擔을 과할 수 있다.

②管轄官廳은 集會 또는 示威가 申告되지 아니한 경우, 申告時의 摘示事項이 그릇되거나 負擔命令이 履行되지 않은 경우 혹은 第

1項과 같은 禁止處分의 前提條件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解散할 수 있다.

(3)禁止된 集會・示威는 解散하여야 한다.

第16條(保護地域) ①聯邦 및 州의 立法機關 또는 聯邦憲法裁判所의 保護地域內에서의 屋外 公共集會와 示威는 禁止된다.

②聯邦의 立法機關과 聯邦憲法裁判所의 保護地域은 聯邦法律로, 各州 立法機關의 保護地域은 州法律로 定한다.

(3)祥細한 事項은 聯邦 및 各州의 保護地域法으로 定한다.

第17條(特別한 開催時의 例外) 第14條 내지 第16條는 屋外 宗教儀式, 宗教上의 行列, 祈願行列과 聖地巡禮, 慣習의인 葬禮儀式, 婚禮賀客의 行進 그리고 傳統의인 民間祝祭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7條a(護身用 武器와 覆面의 禁止) ①屋外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護身用 武器 또는 護身用 武器로서 適合하고 公務擔當者の 執行措置를 防禦할 目的으로 特定한 器物을 所持하는 것은 禁止된다.

②위 開催時 人的同一性의 確認을 방해하는데 適合하고 또한 周圍狀況에 비추어 그러한 目的으로 분장을 한 狀態로 參與하는 것도 역시 禁止된다.

③第17條가 정하는 特別開催時에는 위 1項 및 2項이 適用되지 아니한다. 管轄官廳은 公共의 安全 또는 秩序가 위태로 워질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위 1項 및 2項의 例外를 허용할 수 있다.

④管轄官廳은 위 1項 및 2項의 禁止하는 바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管轄官廳은 특히 위 禁止事項을 위반하는 者들을 集會 또는 示威로부터 排除할 수 있다.

第18條(屋外集會) ①屋外에서의 集會에 대하여는 第7條 第1項, 第8條, 第9條 第1項, 第10條, 第11條 第2項, 第12條 및 第13條 第2項을 準用한다.

②整頓者들의 利用에는 警察의 許可를 要한다. 이에 관하여는 申告時 申請하여야 한다.

③警察은 秩序를 현저히 害하는 參與者들을 集會로부터 排除할 수 있다.

第19條(示威) ①示威의 主管者は 秩序 있는 進行을 보살펴야 한다. 그는 名譽職 整頓者들의 도움을 活用할 수 있으며, 이에는 第9條 第1項 및 第18條가 準用된다.

②參與者들은 主管者 또는 그로부터 任命된 整頓者들의 秩序를維持하기 위한 指示에 응할 義務가 있다.

③主管者が 자신의 意圖대로 示威를 進行할 수 없을 경우에는 示威가 終了되었음을 宣言할 義務가 있다.

④警察은 秩序를 현저히 害하는 參與者들을 示威로부터 排除할 수 있다.

第20條(基本權의 制限) 基本法 第8條의 基本權은 本章의 規定에 의하여 制限된다.

第4章 刑罰 및 過怠料

第21條(集會의 妨害) 禁止되지 않은 集會 또는 示威를 妨害 또는 霧散시키거나 혹은 그 舉行을 挫折케 할 의도로 暴力を 行使 또는 霹迫하거나 또는 현저한 攪亂狀態를 起起한 者는 3 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第22條(主管者 또는 整頓者에 대한 反抗) 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主管者 또는 整頓者의 正當한 秩序權 行使에 暴力 또는 暴力的 霹迫으로 反抗하거나 위 正當한 秩序權의 行使時 이를 物理적으로 攻擊하는 者는 1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第23條(削除)

第24條(武装한 整頓者의 利用) 公共集會 또는 示威의 主管者로서 武器 또는 그 用途上 사람에게 被害를 입히거나 財物을 損壞하는데 適合한 特定器物을 所持한 整頓者들을 利用하는 者는 1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第25條(申告時 摘示事項의 違反; 負擔命令의 不履行) 屋外 公共集會 또는 示威의 主管者로서,

1. 申告時 開催者로서 摘示한 事項과 實質적으로 다르게 集會 또는 示威를 舉行하는 者, 또는
2. 第15條 第1項에 기한 負擔命令을 履行치 않는 者는 6月以下の 自由刑 또는 180日數의 罰金刑에 處한다.

第26條(禁止 또는 未申告集會의 舉行) 開催者 또는 主管者로서

1. 公共集會 또는 示威가 禁止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舉行하거나,

警察에 의한 解散 또는 中斷命令에 불구하고 繼行하는 者, 또는

2. 屋外公共集會 또는 示威를 申告(第14條)한 바 없이 舉行하는 者는

1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第27條(武器의 不法所持) 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武器 또는 그 用途上 사람에게 被害를 입히거나 財物을 損壞하는데 適合한 特定器物을 所持하는 者는 1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官廳의 許可없이 武器 또는 第1段에서와 같은 器物을 開催地에 운반하거나, 開催時 使用하고자 準備하거나, 分配할 目的으로 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所持하는 者도 같은 刑으로 處罰한다.

第28條(制服의 不法着用) 第3條의 規定을 위반하는 者는 2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第29條(秩序違反犯) ① 다음의 者들은 秩序違反犯으로 處罰한다.

1. 舉行이 禁止된 公共集會 또는 示威에 參與한 者,

1 a. 屋外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護身用武器 또는 護身用武器로서 適合하고 公務擔當者の 執行措置를 방어할 目的으로 特定器物을 所持하는 者,

1 b. 屋外公共集會 또는 示威時 人的同一性의 確認을 방해하는 데 適合하고 또한 周圍狀況에 비추어 그러한 目的으로 분장을 한 상태로 參與하는 者,

2. 管轄官廳에 의한 公共集會 또는 示威의 解散命令이 있음

에도 즉시 그 場所를 떠나지 아니하는 者,

3. 屋外公共集會 또는 示威의 參與者로서 第15條 第1項에 기한

負擔命令을 履行하지 않는 者,

4. 主管者 또는 整頓者에 의한 반복된 警告에도 불구하고 公

共集會 또는 示威에 대한 妨害行爲를 그치지 않는 者,

5. 公共集會 또는 示威로부터 排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

시 그 場所를 떠나지 아니하는 者,

6. 그로부터 任命된 整頓者들의 數를 報告하라는 警察의 要求

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數字로 報告하는 者 (第9條 第2項),

7. 公共集會 또는 示威의 主管者 또는 開催者로서 警察이 許

容하거나 認可한 數字보다 많은 數의 整頓者들을 利用하거나

(第9條 第2項, 第18條 第2項), 혹은 第9條 第1項에 의해 許容되

는 바와 다른 標識를 한 整頓者들을 利用하는 者,

8. 主管者로서 公共集會에 出席된 警察公務員들의 臨席을 거절

하거나, 그들에게 적당한 자리를 제공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 第1號 내지 第5號의 경우는 1,000 마르크까지의 過怠料에,

第1項 第6號 내지 第8號의 경우는 5,000 마르크까지의 過怠料에

각 處할 수 있다.

第30條(沒收) 第27條와 第28條 所定의 犯罪行爲 혹은 第

29條 第1項 1a 및 1b號 또는 3號 所定의 秩序違反行爲에 관계

되는 物件은 没收할 수 있다.

【 프랑스 刑法 】

國權 및 國土安全에 대한 内亂, 陰謀와 기타 犯罪

第86條 ①立憲制度를 破壞 또는 變更하거나 國民을 煽動하여 武器를 들고 國權에 反抗하게 하거나 國民이 서로 싸우게 하거나 國土의 保全을 侵害할 目的으로 内亂을 한 자는 無期禁錮에 처한다.

②實行 또는 未遂만으로 第1項의 内亂을 構成한다.

第87條 ①第86條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陰謀를 하고 이를 實行하기 위한 豫備行爲를 하거나 이러한 豫備行爲에 착수한 자는 10年 이상 20年 이하의 禁錮에 처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陰謀를 實行하기 위한 豫備行爲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豫備行爲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5年 이상 10年 이하의 禁錮에 처한다.

③陰謀는 2人 이상이 犯行을 하기로 協議하여 決意한 즉시 成立한다.

④第86條에 規定된 犯罪를 實行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그 陰謀의 決意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러한 제의를 한 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拘禁 및 3,000 프랑 이상 80,000 프랑 이하의 罰金에 처하며, 第42條에 揭記한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할 수 있다.

第88條 第86條 및 第87條에 規定한 경우를 除外하고 國土의

保全을 侵害하거나 프랑스政府가 權限을 행사하는 領域의 一部를 偷窃하고자 한 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拘禁 및 3,000 프랑 이상 80,000 프랑 이하의 罰金에 처하며, 그외에도 第42條에 揭記한 權利를 制限시킬 수 있다.

第89條 正當한 權限에 기한 命令 또는 許可 없이 軍隊를 召集하거나 徵兵 또는 募兵을 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軍隊를 召集하게 하거나 徵兵 또는 募兵을 하게 한 자 또는 이러한 軍隊나 兵員에게 武器 또는 彈藥을 공급한 자는 無期禁錮에 처한다.

第90條 正當한 權限 또는 理由 없이 軍隊를 指揮하거나 政府의 命令에 反하여 軍隊의 指揮權을 장악하거나 解散 또는 解體命令이 있은 후 그 指揮下에 있는 軍隊를 集結시킨 자는 無期禁錮에 처한다.

第91條 武器를 使用하여 第86條, 第88條, 第89條 및 第90條에 規定된 犯罪를 實行한 자는 死刑에 처하며, 未遂인 때에도 또한 같다.

第92條 ①公共兵力을 指揮하는 자가 徵兵 또는 動員에 관한 法律의 執行을 방해하기 위하여 公共兵力의 發動이나 行使를 要求 또는 命令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이를 要求 또는 命令하게 한 때에는 10年 이상 20年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②第1項의 要求 또는 命令이 그 結果를 발생한 경우에는 無期禁錮에 처한다.

殺戮 또는 荒廢에 의하여 國家를 攪亂하는 重罪

第93條 ① 1 이상의 市(邑·面)에서 殺戮 또는 荒廢를 目的으로 內亂을 한 자는 死刑에 처한다.

② 實行 또는 未遂만으로 第1項의 內亂을 構成한다.

第94條 ① 第93條의 犯罪를 陰謀하고 이러한 陰謀를 實行하기 위한豫備行爲를 하거나 그豫備行爲에 착수한 자는 無期禁錮에 처한다.

② 第1項의 陰謀를 實行하기 위한豫備行爲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豫備行爲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10年 이상 20年 이하의 禁錮에 처한다.

③ 陰謀는 2人 이상이 犯行을 하기로 協議하여 決意한 즉시 成立한다.

④ 第93條에 規定된 犯罪를 實行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그 陰謀의 決意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러한 제의를 한 자는 5年 이상 10年 이하의 禁錮에 처한다.

第95條 ① 國家를 攪亂시킬 目的으로 第86條 및 第93條에 規定된 犯罪에 의하여 또는 侵略, 掠奪, 公有 또는 私有財產의 分配에 의하여 또는 同 重罪를 犯한 자에 대응하는 公共兵力을 攻擊하거나 이에 抵抗함으로써 武裝한 徒黨의 首魁가 되거나 이러한徒黨에서 어떠한 職權이나 指揮權을 行使한 자는 死刑에 처한다.

② 集團을 指導하거나 徒黨을 募集 또는 組織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이를 募集 또는 組織하게 한 자 또는 그 情을 알면서 자진

하여 이러한 자에게 補助金, 武器, 彈藥 또는 犯行에 供할 器具를 供給 또는 調達하거나 식량을 提供한 자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이러한 徒黨의 指導者 또는 指揮者와 通謀한 자도 第 1項과 同一한 刑에 처한다.

第96條 徒黨에 가담하였으나 이러한 徒黨에서 어떠한 職務를遂行하거나 指揮權을行使하지 아니한 자는 10年 이상 20年 이하의 禁錮에 처한다.

暴動加擔에 관한 重罪

第97條 暴動 중에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자는 10年 이상 20年 이하의 禁錮에 처한다.

1. 公共兵力의 發動을 妨害 또는 阻止할 目的으로 遮斷物을 設置하거나 참호를 構築하거나 기타 構造物을 만들거나 이를 幫助한 자.
2. 暴力 또는 驕迫에 의하여 公共兵力의 召集 또는 集合을 妨害한 자 또는 指令文 또는 布告文을 配布하거나 暴徒의 集合을 알리는 旗 또는 기타 信號를 携帶하거나 기타의 召集手段에 의하여 暴徒의 集合을 煽動 또는 幫助한 자.
3. 公共兵力에 대한 攻擊 또는 抵抗을 하기 위하여 建造物, 陣地 및 기타 公共施設과 주택에 侵入하거나 이를 占據한 자, 暴徒의 目的을 알면서 強制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暴徒를 주택에 들어오게 한 所有者 또는 賃借人도同一한 刑에 처한다.

第98條 ①暴動 중에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자는 10

年 이상 20年 이하의 禁錮에 처한다.

1. 暴力 또는 驕迫에 의하거나 店舖, 陣地, 倉庫, 兵器庫 또는 기타 公共施設의 掠奪에 의하거나 또는 公共兵力의 武裝解除에 의하여 武器, 彈藥 또는 기타 각종 物資를 奪取한 자
2. 公然하거나 秘密한 武器 또는 彈藥을 휴대하거나 民間人 또는 軍人の 制服, 服裝 또는 기타 記章을 着用한 자
②公然하거나 秘密한 武器 또는 彈藥을 휴대한 자가 民間人 또는 軍人の 制服, 服裝 또는 기타 記章을 着用한 때에는 無期禁錮에 처한다.
- ③暴動 중에 武器를 사용한 자는 死刑에 처한다.

第99條 暴動을 指揮하거나 組織한 자 또는 그 情을 알면서 自進하여 武器, 彈藥, 犯罪手段이나 식량을 提供하거나 調達한 자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暴動을 指導하거나 指揮한 자와 通謀한 자는 死刑에 처한다.

기타 規定

第100條 ①職務上 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유지할 義務가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反逆, 間諜 또는 기타 國防을 害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관한 計劃이나 行爲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즉시 軍當局이나 行政 또는 司直當局에 申告하지 아니한 자는 戰時에는 10年 이상 20年 이하의 禁錮에, 平時에는 1年 이상 5年 이하의 拘禁 및 3,000 프랑 이상 40,000 프랑 이하의 罰金에各처한다.

②第 60 條(共犯規定)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도 正犯 또는 共犯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자는 共犯으로 處罰한다.

1. 強制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犯意를 알면서 國家安全에 관한 重罪 및 輕罪를 犯한 자에게 補助金, 生計手段, 宿泊所, 逃避處 또는 集合場所를 提供한 자
2. 情을 알면서 위 重罪 및 輕罪의 正犯의 書信을 配達하거나, 方法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犯罪의 目的物을 搜索, 隱匿, 運送 또는 傳達하는 것을 幫助한 자

③第 460 條(贓物隱匿)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도 正犯 또는 共犯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자는 不正取得者로 處罰한다.

1. 위 重罪 및 輕罪의 犯行에 提供하였거나 提供하려 한 物件이나 道具 또는 위 重罪 및 犯罪로 인하여 생긴 物件, 資材 또는 書類를 그 情을 알면서 不正取得한 자
2. 犯罪의 搜查, 證據의 發見 또는 犯人の 處罰에 도움이 되는 公·私文書를 그 情을 알면서 毀棄, 窃取, 不正取得, 偽造 또는 變造한 자

④이 條의 경우에 法院은 犯人の 4 寸 以內의 親·姻戚에 대하여 刑을 免除할 수 있다.

第 101 條 ①國家安全에 대한 重罪 및 輕罪의 實行이나 未遂에 이르기 전에 行政 또는 司直當局에 그 事實을 최초로 提報한 자는 그 刑을 免除한다.

②위 重罪 및 輕罪의 完成이나 未遂 후 그 訴追를 開始하기 전에 提報한 자는 刑을 1段階 減輕한다.

③訴追가 開始된 후 國家安全에 대한 犯罪 또는 이와 性質이나 刑量이 동일한 犯罪의 正犯 또는 共犯의 체포에 助力한 자에 대하여도 刑을 1段階 減輕한다.

④個人的으로 特定한 犯罪를 犯한 경우를 除外하고 武裝한 徒黨을 指揮함이 없이 어떠한 任務나 職責을 遂行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담한 자로서 民事當局이나 軍當局의 第1次 警告를 받고 퇴각하거나 이러한 關係當局에 投降한 자에 대하여는 刑을 宣告하지 아니한다.

⑤이 條의 規定에 의하여 刑이 免除된 자에 대하여는 輕罪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滞留를 制限하거나 第 24 條에 揭記된 權利를 制限할 수 있다.

多衆集合

第 104 條 ①公道 또는 公共場所에서는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禁止한다.

1. 武裝한 多衆集合
2. 公共의 平穩을 害할 우려가 있는 非武裝의 多衆集合

②第 1 項의 多衆集合을 構成하는 多衆의 1人이 公然히 武器를 携帶하거나 그 중 數人이 秘密武器 또는 武器로 使用하거나 使用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공개된 또는 秘密스런 物件를 携帶하고 있을 때에는 이 多衆集合은 武裝集合으로 본다.

③第 1 項의 多衆集合을 解散시키거나 法律이나 法院判決 또는 令狀의 執行을 위하여 任務를 부여받은 公共兵力의 代表者는 暴

力이나 暴行이 公共兵力에 대하여 行하여지거나 다른 方法으로서는 公共兵力이 占據하고 있는 地域이나 警備를 委託받은 場所를 방어할 수 없을 경우에는 威力を 行使할 수 있다.

④第 3 項의 경우 以外에는 道知事, 副知事, 市長(郡守, 邑·面長), 副市長(副郡守, 副邑·面長), 警察署長 또는 기타 職務上의 記章을 着用한 司法警察官등은 다음의 節次를 취한 후에 威力에 의하여 多衆集合을 解散시킨다.

1. 多衆集合을 이루는 多衆에게 有效하게 警告할 수 있는 音響 또는 發光信號에 의하여 公共兵力의 出現을 알린다.
2. 擴聲器를 사용하거나 多衆collection을 이루는 多衆에게 有效하게 警告할 수 있는 音響 또는 發光信號를 사용하여 그 多衆에게 解散하도록 警告한다.
3. 第 1 次 警告에도 多衆이 解散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同一한 方法으로 第 2 次 警告를 한다.

⑤사용하여야 할 信號의 種類는 法務部長官, 內務部長官 및 國防部長官의 合同提案에 의한 總理令에서 이를 規定한다.

第 105 條 ①武裝한 또는 非武裝한 多衆集合에 가담하여 第 1 次 警告를 받고 이러한 多衆collection을 離脫하지 아니한 非武裝者는 2 月 이상 1 年 이하의 拘禁에 처한다.

②非武裝者가 威力行使에 의하여 解散된 武裝한 多衆collection에 계속하여 自發的으로 가담하였을 때에는 6 月 이상 3 年 이하의 拘禁에 처한다.

③이 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宣告받은 자는 1 年 이상

5 年 이하의 期間 중 第 42 條(公民權, 財產權, 親族權)에 規定한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할 수 있다.

- 第 106 條** ①示威나 示威의 機會 동안, 集會나 集會의 機會 동안 多衆集合에서 公然하거나 秘密武器 또는 武器로 使用하거나 使用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공개된 또는 秘密스런 物件을 携帶하고 있는 자는 6 月 이상 3 年 이하의 拘禁에 처한다. 다만, 더 重한 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重한 刑에 처한다.
- ②第 1 欄의 多衆collection이 威力에 의하여 解散된 때에는 1 年 이상 5 年 이하의 拘禁에 처한다.
- ③이 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宣告받은 자는 5 年 이상 10 年 이하의 期間 第 42 條에 揭記한 權利를 박탈할 수 있다.
- ④이 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外國人에 대하여는 國內에서의 居住를 制限할 수 있다.

第 107 條 ①公然히 행한 演說, 書面 또는 印刷物의 揭示나 配布에 의하여 非武裝의 多衆collection을 直접으로 煽動한 자는 그 結果가 발생할 때에는 1 月 이상 1 年 이하의 拘禁에 처하며, 그 結果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2 月 이상 6 月 이하의 拘禁 또는 2,000 프랑 이상 8,000 프랑 이하의 罰金에 처하거나 이를併科한다.

②第 1 條과 같은 方法으로 武裝多衆의 collection을 煽動한 자는 그 結果가 발생한 때에는 1 年 이상 5 年 이하의 拘禁에 처하며, 그 結果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 月 이상 1 年 이하의 拘禁 또는 2,000 프랑 이상 20,000 프랑 이하의 罰金에 처하거나 이

를 併科한다.

- 第108條** ①多衆集合輕罪에 대한 訴追權의 行使는 多衆集合 중에 범한 個別的인 罪에 대한 訴追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②刑事訴訟法 第393條 이하의 規定은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는 同一한 多衆集合場所에서 범하여진 輕罪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③公共權力의 代表者가 2次 警告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多衆集合에 계속하여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이 集合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金錢的 賠償을 命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刑法 】

〈 大逆罪 기타 國家에 대한 攻擊 〉

大逆罪

- 第242條** ①暴力 또는 暴力を 수반한 壓迫으로 오스트리아 共和國 또는 그 聯邦各州의 國憲 또는 州憲을 變更하거나 오스트리아에 속하는 영역을 分割할 것을企圖한 자는, 10年以上 20年以下の自由刑에 처한다.
②第1項에서 의미하는企圖는 이미 그 試圖段階에서 存在한다.

有效的 悔悟

- 第243條** ①自意로 그 實行을 抛棄하거나, 數人이 그 計劃에 관여한 경우 그 實行을 저지하거나 自意로 結果를 방지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大逆罪로 處罰하지 아니한다.
②그 實行 또는 結果가 그의 조력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도 行爲者가 그 情을 모르고 自意로 진지하게 그 實行을 沮止하거나 結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지 아니한다.

大逆罪의豫備

- 第244條** ①他人과 大逆罪의 共同犯行을 約束한 자는 1年以上 10年以下の自由刑에 처한다.
②大逆罪를 다른 方法으로 예비하여 大逆罪를企圖할 危險을 蒙起하거나 현저히 擴大시킨 자도 前項과 같이 處罰한다.

有效한 悔悟

第 245 條 ①行爲者가 자의로 자기의 活動을 抛棄하거나, 數人이 그豫備에 관여한 경우 大逆罪를 저지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大逆罪의豫備를 理由로 處罰하지 아니한다.
②第 243 條 第 2 項을 準用한다.

反國家的 結社

第 246 條 ①全의인 目的이 아닐지라도, 不法의인 方法으로 오스트리아 共和國 또는 그 聯邦各州의 獨立性, 憲法에서 정하고 있는 國家形態 또는 合憲的 機構를 攪亂할 結社를 組織한 자는 6月以上 5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②그러한 結社에서 指導的으로 활동하거나 構成員을 모집하거나 資金 기타 중요한 方法으로 그 結社를 후원한 자도 前項과 같이 處罰한다.
③기타의 方法으로 그러한 結社에 參加하거나 第 2 項의 方法 이외의 方法으로 그 結社를 後援한 자는 1년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有效한 悔悟

第 247 條 官廳이 自己의 罪責에 대하여 認知하기 전에, 그 結社와 그의 計劃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時點에서 官廳에 알려준 자는 第 246 條에 의하여 處罰하지 아니한다.

國家와 그 象徵의 詆謗

第 248 條 ①그 行爲가 公共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方式으로, 증오할만한 方法으로, 오스트리아 共和國 또는 그 聯邦各州를 侮辱

하던가 輕蔑하게 한 자는 1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①第 1 項에 記載된 方式으로, 증오할만한 方法으로, 公的인 動機에서 또는 一般에게 公開된 행사에 揭揚된 오스트리아 共和國 또는 그 聯邦各州의 旗 또는 오스트리아의 官廳에 의하여 揭示된 國章, 聯邦國歌 또는 州歌를 侮辱하거나 輕蔑스럽게 만들거나 기타 詆謗하는 자는 6月以下の 自由刑 또는 360日以下の 日數罰金刑에 处한다.

〈國家最高機關에 대한 攻擊〉

聯邦大統領에 대한 暴力과 危險한 霹迫

第 249 條 暴力 또는 危險한 霹迫으로 聯邦大統領을 廢位시키거나 이러한 手段으로 그로 하여금 그 權限을 어떻게든지 遂行하거나 一定한 의미로遂行하는 것을 强要하거나 저지하려고企圖한 자(第 242 條 第 2 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合憲的 代議機關, 行政府, 憲法裁判所, 行政裁判所

또는 最高法院에 대한 强要

第 250 條 暴力 또는 暴力を 수반하는 霹迫으로 國民議會, 聯邦上院, 聯邦議會, 聯邦政府, 州議會, 州政府, 憲法裁判所, 行政裁判所 또는 最高法院으로 하여금 그 權限을 어떻게든지 遂行하거나 일정한 의미로 遂行하는 것을 强要하거나 저지하려고企圖한 자(第 242 條 第 2 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合憲的 代議機關, 行政府, 憲法裁判所, 行政裁判所 또는 最高法院의 構成員 또는 會計監查院의 院長 또는 副院長에 대한 強要

第 251 條 暴力 또는 危險한 驅迫으로 國民議會, 聯邦上院, 聯邦會議, 聯邦政府, 州議會, 州政府, 憲法裁判所, 行政裁判所 또는 最高法院의 構成員 또는 會計監查院의 院長 또는 副院長으로 하여금 그 權限을 어떻게든지 遂行하거나 일정한 의미로 遂行하는 것을 强要하거나 저지하는 자는, 6月以上 5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하고, 重強要(第 106 條)의 경우에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反逆罪〉

國家機密의 反逆

第 252 條 ①外國勢力이나 超國家的 또는 國家間의 機構에 國家機密을 알려 주거나入手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②國家機密을 公共에 알리거나入手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6月以上 5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그러나 國家機密이 憲法을 위태롭게 할 事實(第 3 項)에 해당되는 때에는, 行爲者가 오스트리아共和國에 不利益을 가할 의도하에 行動한 때에 한하여 處罰한다. 憲法을 위태롭게 할 事實에 대한 錯誤는 行爲者를 刑罰로부터 免除하지 아니한다.

③憲法을 위태롭게 할 事實이라 함은, 憲法에 반하는 方法으로

오스트리아共和國의 民主的, 聯邦國家的 또는 法治國家的 構造를 除去하던가 오스트리아共和國의 繼續的 中立性을 폐지하던가 憲法의으로 保障된 權利를 없애던가 制限하거나, 또는 反復하여 그러한 權利를 侵害하는 性向을 드러내는 事實을 말한다.

國家機密의 漏泄

第 253 條 ①特別히 부여된 法的義務로 인하여 秘密을 保持하여야 할 자가, 그것이 國家機密이라는 情을 알고도 그 機密이 外國勢力이나 超國家的 또는 國家間의 機構 또는 公共에 알려지거나入手될 수 있는 事情下에서, 그義務를 違反한 자는 3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②그 國家機密이, 憲法을 위태롭게 할 事實(第 252 條 第 3 項)에 해당되는 때에는 行爲者가 오스트리아共和國에 不利益을 가할 의도하에 行動한 때에 한하여 處罰한다. 憲法을 위태롭게 할 事實에 대한 錯誤는 行爲者를 刑罰로부터 免除하지 아니한다.

國家機密의 探知

第 254 條 ①國家機密을, 外國勢力이나 超國家的 또는 國家間의 機構 또는 公共에 알려지거나入手할 수 있게 하여 오스트리아共和國의 國防 또는 오스트리아共和國과 外國勢力이나 國家間의 機構間의 관계에 중대한 不利益을 초래할 故意로써, 國家機密을 保持하거나 探知한 자는 6月以上 5年以下の 自由刑에 處한다.

②第 253 條 第 2 項을 準用한다.

國家機密의 概念

第255條 本章에서 말하는 國家機密은, 한정된 人員에게만 入手될 수 있고 오스트리아共和國의 國防 또는 오스트리아 共和國과 外國勢力이나 超國家的 또는 國家間의 機構와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不利益의 危險을 배제하기 위하여, 外國勢力이나 超國家的 또는 國家間의 機構에 대하여 秘密로 유지되어야 할 事實, 物件, 知識 특히 書類, 圖畫, 樣式 또는 情報를 말한다.

奧地利에 不利益한 秘密諜報業務

第256條 奧地利共和國에 不利益하게, 秘密諜報組織을 設置하거나 運營하거나 어떠한 方法으로든 후원하는 자는 3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大衆脅迫

第275條 生命, 健康, 身體的 不可侵性, 自由 또는 財產에 대한 侵害를 隨伴하는 脅迫으로 國民 또는 많은 사람을 恐怖와 不安에 빼뜨린 자는, 3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流言蜚語의 流布

第276條 소문을, 그것이 虛偽이고, 많은 사람을 不安하게 하여 公共秩序를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하다는 정을 알면서, 意圖의 으로 流布한 자는 6月以下の 自由刑 또는 360日 以下の 日數罰金刑에 처한다.

武裝結社

第279條 ①함부로 武裝結社 또는 武裝하기로 정하여진 結社를組織하던가, 既成結社를 武裝시키던가, 이러한 結社에서 指導의으로 行動하던가, 그 結社를 위하여 構成員을 募集하던가, 徵募하던가, 軍事的으로 또는 戰鬪를 하도록 教育시키던가, 그 結社에 兵器, 交通手段 또는 情報傳達施設로 裝備를 갖추게 하거나資金 또는 기타 중요한 方法으로 援助한 자는 3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②官廳(第151條 第3項)이 자신의 罪責에 대하여 認知하기 전에 그 結社와 그 結社의 計劃에 관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것들이 아직 秘密인 시점에서 官廳에 申告한 자는 第1項에 의하여 處罰하지 아니한다.

法律에 대한 不服從의 煽動

第281條 印刷物, 放送 기타 廣範圍한 여론에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特定法律에 대한 불복종을 煽動한 자는 1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刑罰을 科하는 行爲의 煽動과 讚揚

第282條 ①印刷物, 放送 기타 廣範圍한 여론에 접할 수 있는 方法으로 刑罰을 科하는 行爲를 선동하는 자는, 그러한 行爲의 관여자(第12條)로서 더 중한 刑罰을 받게 되어 있지 않으면, 2年以下の 自由刑에 處한다.

②故意的으로 범하여진, 1年以上의 自由刑을 科하게 되어 있는

부 록

行爲를, 第 1 項에 記載된 方法으로, 一般의 法感情을 격분하게 하거나, 그러한 行爲를 범하도록 鼓舞하기에 적절한 方法으로 贊揚하는 자도 前項과 같이 처벌한다.

外國을 위한 軍事諜報組織

第 319 條 國內에서 外國勢力이나 超國家的 또는 國家間 機構를 위하여 軍事諜報組織을 設置하거나 運營하거나 그러한 施設을 어떠한 方法으로든 後援하는 자는 2 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中立의 危殆化

第 320 條 오스트리아 共和國이 參가하지 아니한 戰爭 또는 武力衝突 중에, 또는 그러한 戰爭 또는 武力衝突의 직접 급박한 危險에 있어서, 國내에서, 諒知下에, 그 當事者 일방을 위하여,

1. 일방의 軍事組織, 船舶, 車輛, 航空機에 戰爭企圖에 參가할 수 있도록 裝備를 갖추어 주거나, 이를 武裝시키던가,
2. 支援部隊를 組織하거나 維持하던가 이를 위하거나 일방의 兵役을 위한 募兵所를 設置 또는 運營하거나,
3. 現行法令에 反하여 兵器를 國外로 輸出하거나 國내를 통하여 通過運送하거나
4. 軍事目的으로 財政借款을 供與하거나 公共集會를 開催하거나,
5. 軍事諜報를 傳達하던가 또는 이러한 目的에서 通信施設을 設置하거나 使用한 者는 6月以上 5 年以下の 自由刑에 처한다.

북한형법 (1950. 3. 3. 최고인민회의 법령)

〈형사정책의 일반원칙〉

제 9 조 (유추해석 허용) 범죄적 행위로써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

제 11 조 (고의 · 과실)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전조의 형벌을 적용함은 그가 고의 또는 과실로써 행위한 경우에 한한다. 고의의 행위라 함은 자기의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결과를 예견하면서 그 결과를 희망하였거나 또는 그 결과의 발생을 의식적으로 허용한 행위를 말한다. 과실의 행위라 함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히 기대한 행위를 말한다.

〈형사소추의 시효〉

제 59 조 (시효기간) 다음의 경우에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1. 5년의 징역 또는 그 보다는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 이후 5년을 지났을 때
2.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을 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후 3년을 지났을 때

3. 교화로동 또는 이 보다 경한 종류의 형벌만을 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이후 2년을 지났을 때
4. 사인의 소추로써만 제기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는 3개월이 지났을 때

제 60 조 (시효의 중단과 공안범죄에 대한 특칙) ①전조의 기간 중에 범죄자가 새로운 동종 또는 그 보다 중한 죄를 범하거나 또는 예심 혹은 공판을 회피하였을 때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형사수속이 있을 때 시효는 중단된다.
②반국가적 범죄 및 친일적 사상을 가지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행위에 대한 시효의 적용은 제판소의 자유재량에 의 한다.

〈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 〉

제 64 조 (정의규정) ①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을 전복·문란 혹은 약화시킬 목적이거나 또는 공화국의 대외안전 및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기본을 문란 혹은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전체 근로자들이 가지는 이해관계의 국제적 연대성에 비추어 사회주의국가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적대할 목적을 가진 행위도 역시 이를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로 인정된다.

제 65 조 (무장폭동조직 · 영토침해등) ①반국가적 목적으로 무장 폭동을 조직하거나 무장부대 또는 도당을 지어 공화국 영토에 침해하거나 또는 중앙이나 지방의 정권을 강점하려는 시도 혹은

공화국 영토의 일부를 분리시키려는 시도에 참가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참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66 조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행위) 외국 또는 외국에 있는 사회적 집단으로 하여금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첩 기타의 적대적 행위 특히 봉쇄, 공화국 국가재산의 강점, 외교관계의 단절,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의 파기 등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 67 조 (적국과의 연락 · 협조) 반국가적 목적으로 공화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외국 또는 대표자와 연락한 자 및 외국이나 외국인 집단에 협조한 자는 제 66 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 68 조 (반역) 조국에 대한 반역 즉 간첩행위, 군사적·국가적 비밀의 전달, 원수의 편으로 넘어가며 혹은 외국으로 탈주하는 등, 조국의 국가적 독립을 침해하거나, 조국의 군사상 위력과 영토불가침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공화국 공민으로서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 69 조 (군무자의 특칙) 군무자로서 전조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 71 조 (간첩행위) 간첩행위 즉 외국 또는 반국가적 단체에 국

가의 중대한 기밀로 되는 정보를 전달하였거나 또는 전달할 목적으로 이를 절취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수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하여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 72 조 (테러행위) 인민주권에 반항할 목적 또는 해방 이후에 실시한 민족개혁을 파괴할 목적으로 국가주권의 대표자 혹은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한 자는 제 66 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 73 조 (국가해독행위) 해독행위, 즉 국가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국가기관 및 국가기업소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그의 정상적 활동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써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 유통, 신용제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한 자 및 종전의 소유제를 위하여 국가기관, 국가기업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의 정상적 활동을 저해하는 자는 제 66 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 74 조 (파괴행위) 파괴행위 즉 반국가적 목적으로 철도 기타의 교통로, 운수수단, 수도, 국가 혹은 사회단체의 창고 기타의 시설 또는 건조물을 폭파하거나 방화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66 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 75 조 (직무유기·태업) 태업행위 즉 정부 및 국가기관의 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잡하게 이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 76 조 (반국가적 범죄의 선전·선동) ①인민주권을 폭력 또는 반역적 행위로써 전복, 문란 혹은 약화시키거나 기타 반국가적 범죄를 행하도록 하는 선전·선동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②군중적 흥분상태 혹은 전투상태 밑에서 또는 민족적 혹은 종교적 편견을 이용하여 전향의 죄를 범한 자는 제 66 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 77 조 (반국가적 서류의 작성등) 반국가적 서류를 작성·보관 또는 살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제 78 조 (조직활동·단체참가) 본장에 규정한 죄를 준비 또는 실행할 목적을 가진 조직활동을 하거나 또는 본장에 규정한 죄를 준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에 참가하는 자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본장 각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 79 조 (제국주의 참여등) 일본 기타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책임적 또는 비밀적 직위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조선민족의 민족해방운동과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박해·탄압한 자는 제 66 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제 80 조 (불고지)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군무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81 조 (불고지) 반국가적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83 조(공무방해, 공무강요) 군중적 소동을 일으켜 주권당국의 적법적 요구를 실행하지 않거나 혹은 주권당국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또는 명백히 비법적인 행위를 그 대표자에게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 방화 · 체신수단의 파괴 및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군중적 소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처단한다.

1. 피수 및 본항의 행위를 수행한 자 및 무장을 하고 주권당국에 반항한 자는 제 66 조에 규정한 형벌에 처한다.
2. 전호 이외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99 조(유언비어 날조, 유포)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거나 주권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켜 또는 그의 위신을 저락시킬 수 있을 행위 또는 불확실한 풍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로동에 처한다.

제 100 조(경한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밀을 누설한 사인의 행위가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01 조(증오심의 선동) ①민족적 또는 종교적 불화나 증오를 일으키게 할 선전 · 선동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내용의 서류를 살포하거나 작성 ·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중적 흥분상태 또는 전투상태에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한다.

各國의 公安關係 法律
(公安資料集 第6卷)

1989.	6.	8.	印 刷
1989.	6.	12.	發 行
發行處 : 大檢察廳 公安部			
印刷處 : 世光文化(株)			
電話 : 739-9611~4			

〈비매품〉